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6년 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개정이유

○ 상수도 요금 인상(안)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정비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상수도 요금 인상(안)에 따라 업종별/구경별 요금표 개정(별표 3)

○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 정비

- “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” 에서 “차상위 계층”삭제(안 제35조제1항제6호)
- “18세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”신설(안 제35조 제1항제10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다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16.3.23. ~ 4.12)
라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마. 성별영향평가분석 : 원안동의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1항제6호 중 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”을 “수급권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18세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3]

사 용 료 요 율 표(제23조 관련)

구분 / 업종별	수량 (㎥/월)	금액(원/㎥) 2016년 10월 고지분부터	2017년 10월 고지분부터	2018년 10월 고지분부터	구경별 정액요금 구경별 (㎜)	요금 (원/월)
가정용	0 ~ 20	470	560	650	15	1,060
	21 ~ 30	710	840	970	20	2,950
	31 이상	950	1,120	1,300		
일반용	0 ~ 50	650	770	890	25	4,740
	51~100	780	930	1,070		
	101~300	1,240	1,470	1,700	32	8,460
	301~500	1,300	1,540	1,780	40	14,290
	501~이상	1,500	1,780	2,050		
대중탕용	0~300	700	830	950	50	22,090
	301~500	840	990	1,150	75	52,820
	501~700	1,050	1,240	1,430		
	701이상	1,540	1,830	2,110	100	91,110
산업용	단일종량제	900	1,070	1,240	150	192,350
공업용	단일종량제	650	770	890	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5조(요금 등의 감면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	제35조(요금 등의 감면) ① -----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	6.---------- 수급권자
7. ~ 9. (생 략)	7. ~ 9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0. 18세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
10. (생 략)	11. (현행 제10호와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

[별표 3]

사 용 료 요 율 표

구경별정액요금	
계량기 구경 (㎜)	1전당단가 (원/월)
13	880
20	2,470
25	3,960
32	7,050
40	11,970
50	18,110
75	44,290
100	75,580
150	166,500

업종별 사용요금		
업종	사용구분 (㎥/월)	㎥당 단가 (원)
가 정 용	0 ~ 20	400
	21 ~ 30	600
	31 이상	800
일 반 용	0 ~ 50	590
	51~100	710
	101~300	1,130
	301~500	1,190
	501~이상	1,370
대중탕용	0~300	580
	301~500	700
	501~700	870
	701이상	1,280
산 업 용	단일종량제	740
공 업 용	단일종량제	520

개 정 안

[별표 3]

사 용 료 요 율 표(제23조 관련)

구분 / 업종별	수량 (㎥/월)	금액(원/㎥)			구경별 정액요금	
		2016년 10월 고지분부터	2017년 10월 고지분부터	2018년 10월 고지분부터	구경별 (㎜)	요금 (원/월)
가정용	0 ~ 20	470	560	650	15	1,060
	21 ~ 30	710	840	970		
	31 이상	950	1,120	1,300	20	2,950
일반용	0 ~ 50	650	770	890		
	51~100	780	930	1,070	25	4,740
	101~300	1,240	1,470	1,700		
	301~500	1,300	1,540	1,780	32	8,460
	501~이상	1,500	1,780	2,050		
대중탕용	0~300	700	830	950	40	14,290
	301~500	840	990	1,150	50	22,090
	501~700	1,050	1,240	1,430		
	701이상	1,540	1,830	2,110	75	52,820
산업용	단일종량제	900	1,070	1,240	100	91,110
공업용	단일종량제	650	770	890	150	192,350